#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연월일 : 2019. 3. 의 안 번 호 19157

제 안 자:환경노동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의안명         | 대표발의자    | 발의일        | 경 과                     |
|-------------|----------|------------|-------------------------|
| 의원정         | (제출자)    | (제출일)      | 78 <del>41</del>        |
| 대기환경보전법     |          |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     |
|             | 과 아내     | 2017.3.24  | 체회의(2017.9.14) 상정 후 제안  |
| 일부개정법률안     | 정양석      | 2017.3.24  |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
| (제2006384호) |          |            |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
| 대기환경보전법     |          |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     |
|             | 기내이      | 0017.6.00  | 체회의(2017.9.14) 상정 후 제안  |
| 일부개정법률안     | 강병원      | 2017.6.23  |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
| (제2007543호) |          |            |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
| 리기하건 내 거 배  |          |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     |
| 대기환경보전법     | راحا الم | 0017 0 00  | 체회의(2017.11.23) 상정 후 제안 |
|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      | 2017.8.22  |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
| (제2008638호) |          |            |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
| 대기환경보전법     |          |            |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     |
|             | 키 드 기    | 0010.0.0   | 체회의(2018.8.28) 상정 후 제안  |
| 일부개정법률안     | 최도자      | 2018.2.2   |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
| (제2011719호) |          |            |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
| 대기환경보전법     |          |            |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     |
|             | 기사회      | 2010 4 0 4 | 체회의(2018.8.28) 상정 후 제안  |
| 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      | 2018.4.24  |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
| (제2013218호) |          |            | 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

| 대기환경보전법<br>일부개정법률안<br>(제2013377호) | 신창현         | 2018.5.2  |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br>체회의(2018.8.28) 상정 후 제안<br>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br>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
|-----------------------------------|-------------|-----------|---|
| 대기환경보전법<br>일부개정법률안<br>(제2015491호) | 장제원         | 2018.9.13 |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br>체회의(2018.11.22) 상정 후 제안<br>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br>거쳐 환경소위원회 회부 |
| 대기환경보전법<br>일부개정법률안<br>(위원회 대안)    | 환경노동<br>위원장 | 2019. 3.  |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br>체회의(2019.3.12) 의결  |

#### 2. 대안의 제안이유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대신하여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 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 저감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정비하며, 저공해자동차 정의를 자동차 배출 가스허용기준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고 저공해차 의무보 급제도 도입 등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 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

해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 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등을 함께 규정함(안 제2조제16호, 제46조 및 제48조).

- 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 제도를 폐지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다.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안 제44조 및 제45조).
- 라. 노후 건설기계(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및 저공해조치시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 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함(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
- 바.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수시검사 관련 업무

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안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사.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안 제63조).

#### 4. 부대의견

환경부는 2019년 6월말까지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조치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미달성기업에 대한 조치방안을 명명(命名)함에 있어과징금이라는 명칭 역시 재검토하도록 할 것.

#### 법률 제 호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제16조제3항 중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를 "제44조"로 하고,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8항 본문 중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공개하여야"를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5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대기관리권역

- 제45조제1항 중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될"을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될"로 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각각 "대기관리권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한다.
- 제46조제1항 중 "원동기"를 "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 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

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 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 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
- 2. 폐차하는 경우
-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를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그 자동차"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자동차"를 각각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의 소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면, 같은 조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로,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자동차"를 각각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같은 항 단서 중 "말소하는 경우"를 "말소하거나, 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를 "저 공해자동차"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저 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로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제11항에 따른 표지"를 "제12항에 따라 발급 받은 표지"로 하고, 제15항 중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 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자 동차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저공해자 동차 등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등에 부착할 수 있다.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 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이하 "연간 저공해자 동차 보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의 개발현황, 자동차판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자동차판매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법·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

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 1. 국가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이하 "구매·임차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임차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

- 매·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실적을 회계연도 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임차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 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0조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 2호"를 "제2호와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제60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 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 과를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기 전에 인증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 제6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대기관리권역
- 제85조에 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제60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 제91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 제91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5까지 및 제13호를 각각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13호,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5까지 및 제14호로 한다.
-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한 자
  - 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제94조제1항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등록된 저공해자동차 등(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를 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 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 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 로 본다.
- 제5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저공해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 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이 법 제2조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본다.
- 제7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저공해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 15의2. (생 략)           | 1. ~ 15의2. (현행과 같음) |
| 16.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
|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      |
|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           |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해자동차를 말한다.                 |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
|                            | 없는 자동차              |
|                            |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   |
|                            | 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       |
|                            | 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
|                            | <u> 자동차</u>         |
|                            | 17. ~ 22. (현행과 같음)  |
| 17. ~ 22. (생 략)            |                     |
|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② (생        |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② (현 |
| 략)                         | 행과 같음)              |
|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3                   |
| 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                     |
|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                     |
| 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        | , <u>제44조</u>       |
| <u>44조</u> 및 제45조에서 같다)·특별 |                     |
| 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 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 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 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 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 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제18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
|------------------|
|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
| 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
|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   |
|                  |
|                  |
|                  |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삭 제>            |

할 때에 지형과 기상조건 등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환경기준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의견을 물어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 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 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

제19조(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지역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2년 이내에 그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 (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과절차에 따라 수립하고, 환경부

<삭 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 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승 인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으로 평가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결과를 실 천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 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 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실천계획의 목표기간 내 <삭 제>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계획이 목표기간 내에 달 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 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 는 대도시 시장이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면 국가 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하는 환경 관련 국고보조금을 줄이거나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제21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 시 시장은 그 지역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 목

<삭 제>

표와 조건을 달성하면 그 결과 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 (이하 "대기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 정 해제를 요청받으면 그 지역 의 환경기준 달성 여부와 대기 환경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대기 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대기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 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

- ⑦ (생략)
-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 제32조(측정기기의 | 부착 | 등) | 1 | ~ |
|------------|----|----|---|---|
|------------|----|----|---|---|

- ⑦ (현행과 같음)
- 8 -----

-----

전산망을 운영하는 경우 <u>그 전</u> 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인 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u>공</u> 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주 기 및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⑩ (생 략)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휘발성유기 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
   2. 대기관리권역

   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

| <u>다</u>           | 1        |
|--------------------|----------|
|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리   | <u>}</u> |
|                    | -        |
|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히    | <u>}</u> |
| 고,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  | ]        |
| 적으로 공개하여야 다만, 저    |          |
| 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배출하 | }        |
| 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한   | 1        |
| 정처분을 하거나 제35조에 따리  | <u>}</u> |
|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          |
| 는 전산처리한 결과를 사용하여   | 1        |
| <u>야 한다.</u>       |          |
| ⑨·⑩ (현행과 같음)       |          |
| 세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 )        |
| ①                  | _        |
|                    | _        |
|                    | _        |
|                    | _        |
|                    | _        |
|                    | _        |
|                    | _        |
|                    |          |
| 1. (현행과 같음)        |          |

- 23 -

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대기환경규 제지역"이라 한다)

3. (생략)

② ~ ⑨ (생 략)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 특 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 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대 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 19조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 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 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 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또 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 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 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 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4

| 3. (현행과 같음)      |
|------------------|
| ② ~ ⑨ (현행과 같음)   |
|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
|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   |
| 대기관리권역           |
|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  |
| 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될- |
|                  |
|                  |
|                  |
|                  |
|                  |
|                  |
|                  |
|                  |
|                  |
|                  |
|                  |
| 대기관리권역           |
|                  |
|                  |
|                  |

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 대 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 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에 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 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물질이 추가로 고 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 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4조제3항 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 ⑤ (생 략)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저 등) ①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 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제7호및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한다)는그자동차(이하

| <u>.</u>         |              |
|------------------|--------------|
| ②                |              |
|                  |              |
|                  | <u>대</u>     |
| <u>기관리권역</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⑤ (현행과       | 같음)          |
| 제46조(제작차의        | 배출허용기준       |
| <del>트</del> ) ① | <u>원동기 및</u> |
| 저공해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 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 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u><단서</u> 신설>

#### ② ~ ④ (생 략)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 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 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 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 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 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 략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 <u></u> 다만,                        |
|------------------------------------|
| 저공해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                    |
| 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                    |
| 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
|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이                    |
| 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
| 한다.                                |
| <u>으 ; .</u><br>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
| //HO고(/// 귀시 // 위한 단 8 // 보        |
|                                    |
|                                    |
| 2 -1 -1 -1 -1 -1 -1 -1 -1 -1 -1 -1 |
| <u>제작차배출허용기</u>                    |
| 준(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
|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 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 도·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 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 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 3. (생략)

#### ② (생략)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 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 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 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
| ①                  |
|                    |
|                    |
|                    |
|                    |
|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      |
| 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  |
| 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   |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 자동차 및 건설기계         |
|                    |
| <u>자</u>           |
| 동차 및 건설기계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 2 (현행과 같음)         |
|                    |
| 3                  |
|                    |
|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1. · 2. (생략)
-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u>자</u> <u>동차</u>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u>자동차</u> 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 조 또는 교체하는 자
- 4. 제1항에 따라 <u>자동차</u>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자

#### 5. · 6. (생략)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u>자동차의 소유</u> <u>자</u>(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u>자동차</u>의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

| 1.⋅2. (현행과 같음)              |
|-----------------------------|
| 3 <u>\textbf{z}</u>         |
| 동차 및 건설기계                   |
| <u>자동차</u>                  |
| <u>및 건설기계</u>               |
|                             |
| 4 <u>자동차 및 건설</u>           |
| 기계                          |
| -<br>5.·6. (현행과 같음)         |
| 5.·6. (연영과 실금)<br>④         |
| ( <del>1</del> )            |
| 자동차의 소                      |
| 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
|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            |
| 유자                          |
|                             |
|                             |
| <u>자동차 및</u>                |
| <u>자동차 및</u><br><u>건설기계</u> |
|                             |

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u>자동</u>

<u>차</u>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u>말소하는 경우</u>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생략)
- ⑥ ~ ⑩ (생 략)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국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 는 교체한 <u>자동차</u>에 대하여 외 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 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u>건설기계</u> <u>자</u> |
|----------------------|
| 동차 및 건설기계            |
|                      |
|                      |
|                      |
|                      |
|                      |
| <u>말소</u>            |
| 하거나, 건설기계 엔진을 전기     |
| 모터로 교체하는 경우          |
|                      |
| 1. ~ 3. (현행과 같음)     |
| ⑥ ~ ⑩ (현행과 같음)       |
| ① <u>저공해자동차</u>      |
|                      |
|                      |
|                      |
|                      |
|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
|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     |
| 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    |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      |
| 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저공해     |
| 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
|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1 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 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생략)

④ 제13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 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
|-----------------------------------|
|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 는 제1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
|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및 건설                 |
| 기계가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                   |
|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
| 발급할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                  |
| 등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
| 저공해자동차등에 부착할 수 있                  |
| <u>다.</u>                         |
| <u>③</u>                          |
|                                   |
| -1)10                             |
| <u>제12</u>                        |
| <u>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u>             |
|                                   |
|                                   |
| 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
| 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지원에 관한 |
| 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페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 ① (생 략)

<신 설>

| <br> |  |
|------|--|
|      |  |
|      |  |
| <br> |  |
|      |  |
| <br> |  |

<u>⑥</u>~ <u>⑧</u> (현행 제 15항부터 제17 항까지의 규정과 같음)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누구든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하려는 경우
- <u>2. 폐차하는 경우</u>
-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 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 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 매자"라 한다)가 연간 보급하여 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 표(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 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 동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 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 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 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에는 저공해 자동차의 개발현황, 자동차판매 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 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 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 ⑤ 자동차판매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 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저공 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 법·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 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 로 정한다.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 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 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 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

<u><신 설></u>

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 1. 국가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 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 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 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 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 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 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 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 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이

<신 설>

<신 설>

하 "구매·임차계획"이라 한다) 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임차계획을 제출하 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 은 구매·임차계획에 따른 저공 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임차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 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 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 매·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임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 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 ①·② (생 략)
- ③「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 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 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는 제1항 에 따른 인증을 면제한다.
- ④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 Φ-----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1.~ 2. (생 략)

차 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 관련 정 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국 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 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 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 를 실시할 수 있다.

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삭</u> 제>

-----제2호와 제3호-

1.~ 2. (현행과 같음)

(5) · (6) (생략)

의 관리) ①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 3.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 는 경우
- (5) (6) (현행과 같음)
-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의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 유)
  - ⑥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 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 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 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 관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 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의 수시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 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 저 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 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 다)를 받아야 한다.

-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 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 2. (생략)
- ② ~ ⑥ (생 략)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 엔진에 대하여 자동차에 부착   |
|----|-------------------|
|    | 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   |
|    | 기 전에 인증의 기준을 유지할  |
|    | 수 있는지를 수시로 검사할 수  |
|    | <u>있다.</u>        |
|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 |
|    |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 환경부렁으로 정한다.       |
| H) | 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  |
|    | 검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대기관리권역
  - 2.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5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 제85조(청문) -----

다음 각 호이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 여야 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6의2. (생략)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장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의2. (생 략) <u><신 설></u>

<u>5.</u> (생 략) 7. ~ 13. (생 략)

<신 설>

| 1. ~ 6. (현행과 같음)            |
|-----------------------------|
| <u>6</u> 의2. 제60조제4항에 따른 인증 |
| 의 취소                        |
| <u>6</u> 의3. (현행 6의2와 같음)   |
| 제91조(벌칙)                    |
|                             |
|                             |
| <u>.</u>                    |
|                             |

- 1. ~ 4의2. (현행과 같음)
- 5.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
  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
  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
  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
  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 6. (현행 제5호와 같음)
- 8. ~ <u>14</u>. (현행 제7호부터 제1 3호까지와 같음)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94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1의2. (생략) <신 설>

<신 설>

2. (생략)

② ~ ⑥ (생 략)

-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하 자
- 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1. (현행과 같음)
- 1의2. (현행과 같음)
- 1의3.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 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 한 자
- 1의4.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 니한 자
- 2.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